

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시행관리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10. 18. -----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1. 10. 18.

다. 상 정 일 자 : 2001. 10. 27.(제9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상정
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도시개발과장 구자현)

가. 제안이유

-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대동 홍티마을일원 공영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범위, 사업시행방법, 동 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다대동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(안 제2조)
-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구에서 시행할 사업의 범위와 민자투자자가 시행하여야 할 사업의 범위 등을 규정함(안 제3조)
- 민자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사업비의 범위, 투자비의 상환방법 등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동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경영수지를 구분하기 위하여 동사업특별회계를 설치, 관리토록 하고, 회계의 세입·세출에 대한 회계관직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범위를 명확히 함(안 제6조 내지 제9조)
- 사업종료후의 경영수익금의 사용범위 및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

- 본 조례 제정 건은 우리구 다대동 흥티마을 일원의 공영개발사업을 명시적으로 구체화하여 민자유치에 필요한 사업범위와 사업시행방법, 투자활동에 따른 투자범위와 투자비 상환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
- 또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 함으로써 회계의 세입·세출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하고, 경영 수익금의 귀속 처리등 위 동사업의 관리운영을 원활히 추진함에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위 조례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